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9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김선교 · 박준태
인요한 · 최수진 · 유상범
강승규 · 최은석 · 강명구
박성민 · 이만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(出捐)·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,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

있도록 하여,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4조제2항 등).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”로, “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”를 “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(이하 “대도시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대도시”를 “대도시등의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대도시”를 “대도시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도시”를 “대도시등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대도시”를 “대도시등의”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“대도시”를 각각 “대도시등의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또는 대도시”를 “또는 대도시등의”로, “및 대도시”를 “및 대도시등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대도시”를 “대도시등의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대도시”를 “대도시등의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 (생략)	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) 50만 이상의 <u>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</u> 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</u> ----- <u>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(이하 “대도시등”이라 한다)</u>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정관) ① (생략)	제5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<u>대도시</u>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도시등의</u> ----- --.
제8조(임원의 선임) ①·② (생략)	제8조(임원의 선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사(이사장은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(이하 “당연직이사”라 한다)과 원장이	③ ----- ----- -----

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사업계획 등 승인)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,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8조(결산서 등 제출)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·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(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

-----대도시등의-----
-----.

④ -----

대도시등-----.

제17조(사업계획 등 승인) -----

-----대도시등의-----

-----.

제18조(결산서 등 제출) -----

-----대도시등의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대도시등의-----

해당한다)

3. (생 략)

제19조(경영평가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20조(지방연구원협의회 구성)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, 연구실적의 상호활용,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22조(검사 및 감독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3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경영평가 등) ① -----
---또는 대도시등의-----

-----및 대도시등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지방연구원협의회 구성) ① -----

-----대도시등의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검사 및 감독) ① -----
-----대도시등의-----

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 · 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